

# 산업안전보건법의 제·개정 요지(2)



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의 역사를 되짚어 보고자, 협회는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처음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의 제·개정 역사와 주요 골자를 소개합니다. 이 시리즈는 '산업안전보건법 제·개정사'(2015, 고용노동부)를 발췌하여 만들었습니다.

정리 대외홍보팀

## 1.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요지

[제정\[법률 제3532호, 1981. 12. 31.\]](#)

중화학공업의 추진 등 급격한 산업화에 따라 위험한 기계기구의 사용 증가, 새로운 공법의 채용 등에 의한 산업재해의 대형화와 빈발, 유해물질의 대량사용 및 작업환경의 다양화에 따른 직업병의 발생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적극적·종합적인 산업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위험 방지 기준을 확립하고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사업주 및 전문단체의 자율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산업재해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, 보건을 증진·향상하게 하려는 것임.

- ①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를 명시함.
- ② 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를 두어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조정하도록 함.
- ③ 유해위험성이 있는 사업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게 하고 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며 안전보건관계자 및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함.
- ④ 작업환경이 인체에 해로운 작업장에 대하여는 작업환경을 측정 기록하고,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게 함.
- ⑤ 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종류와 설치, 운영방법 및 정부의 지원육성방안을 정하고 산재예방에 관한 과학기술의 진흥과 연구개발을 추진하여 그 성과를 보급할 수 있도록 함.

## 2.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요지 (제1차~3차)

제1차 개정[법률 제4220호, 1990. 1. 13.]

[전부 개정]

### 개정이유

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에 있어서의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고 자율재해 예방활동이 촉진 될 수 있도록 하며, 산업재해예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재해예방기금을 설치하여 산업재해의 감소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·증진시키려는 것임.

### 주요내용

- ① 산업안전보건업무에 대한 정부의 책무를 규정함.
- ② 행정기관이 사업장내 안전·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노동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.
- ③ 근로자대표는 사업장내 안전·보건에 관한 조치결과를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, 사업주는 이에 성실히 응하도록 함.
- ④ 사업주는 안전·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도록 함.
- ⑤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, 안전·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의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에 추가하고, 의사가 아닌 보건관리자를 둔 사업의 경우에는 산업보건의를 따로 두어 근로자의 건강관리업무 등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도록 하고 종전의 보건담당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자의 업무에 흡수·통합함.



- 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을 노·사 동수로 함.
- ⑦ 건설분야 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해체작업 및 구축물에 의한 붕괴 우려가 있을 때에도 안전상의 조치를 하도록 추가하고, 표준 안전 관리비를 계상하는 근거를 마련함.
- ⑧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·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함.
- ⑨ 기계·기구 등을 대여자에 대하여 안전상의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, 유해·위험기계·기구에 부착하는 방호장치는 성능검사를 받도록 함.
- ⑩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거나, 보건상 유해한 화학물질에 대하여 그 종류에 따라 제조금지, 제조·사용허가제, 성분·함유량 등의 표시제 내지 유해성 조사 및 조치의무 등에 관하여 정함.
- ⑪ 건강관리수첩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주의 건강관리책임을 명확히 하고, 직업병 발생을 예방하며, 질병에 이환된 근로자의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함.
- ⑫ 유해·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

간을 1일 6시간, 1주 34시간으로 제한함.

⑬ 중대재해발생사업장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 
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안전·보건진단  
을 받도록 함.

⑭ 산업재해예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 
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재해에  
방기금을 설치·운용하도록 함.

#### 제2차 개정[법률 제4622호, 1993. 12. 27.]

공산품품질관리법(현행 품질경영 및 공산품  
안전관리법)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  
고 있는 관계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.

---

#### 공산품품질관리법개정법률 [법률 제4622호, 1993. 12. 27.]

---

##### 본문 생략

##### 부칙
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 
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내지 제5조 생략

제6조 (다른 법률의 개정)

①생략

②산업안전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5조 제1항 중 ‘공산품품질관리법의 규정에  
의한 품질검사’를 ‘품질경영촉진법

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’로 한다.

제7조 생략

#### 제3차 개정[법률 제4826호, 1994. 12. 22.]

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 
이를 인용하고 있는 관계조문을 정비하려는  
것임.☺

---

#### 산업재해보상보험법개정법률 [법률 제4826호, 1994. 12. 22.]

---

##### 본문 생략

##### 부칙
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1995년 5월 1일부터  
시행한다.

제2조 내지 제9조 생략

제10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산업안전보건법  
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3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중 “산업재해보상  
보험특별회계법에 의한 세출예산총액”을 각  
각 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 각호에 해당  
하는 지출예산총액”으로 한다.

②내지 ④생략

제11조 생략

---

(다음호에 계속)